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등〉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3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3
2. 관계기관 의견	9
3. 조문의 구성체계	11
4.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2
(2)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5조)	15
(3)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안 제6조)	17
(4) 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안 제7조)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현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14.
3. 회부연월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학교의 행정·회계·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 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호봉제 적용을 받는 학교회계 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 학교회계직원은 교육공무직원¹⁾으로 각급 학교의 사무 및 교무 행정,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을 통칭하는데, 특히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월급제 학교회계직원”과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제(8·9급)를 적용하는 직원을 칭하고 있음.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0년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육성회 제도가 도입되어 육성회비로 육성회 직원이 처음 채용되었고 보수는 지방기능직 10등급에 준하여 지급하였음.

1)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과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이후 1997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육성회비가 폐지되어 고용
안정 측면에서 당시 국공립 초등학교 육성회 직원은 기능직 공무원
으로 전환되었고²⁾,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육성회 직원은 학부모회(구
육성회) 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000년 단위학교에 학교회계가 도입³⁾되어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일종의 육성회비)가 학교회계 세입재원으로 포함되고, 이에
따라 학부모회(구 육성회) 직원은 학교회계직원으로 편입하게 되었음.

2004년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 따라 대부분 학교
회계직원은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였으나, 기존 육성회 직원이었던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처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호봉제를 유지하게 되었음⁴⁾.

2026년 6월 현재 남아있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직원)은
2,449명이⁵⁾,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8·9급 호봉제를 적용

2) 2013년 기능직 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라 국공립 초등학교 (구)육성회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

3)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능률적인 학교운영 도모[「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
교회계의 설치) 신설, 2000.1.28.개정/2001.1.1. 시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이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는 호봉제 적용받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과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체계
적용을 받는 월급제 학교회계직원으로 이원화됨.

5) 교육부에 따르면 2004년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연봉제계약이 권장되었고,
이후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신규채용은 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임.

하고 있으며⁶⁾, 근무지는 대부분 국공립 중·고등학교이나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보에 따라 교육청(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채용시기별 호봉제 적용 교육공무직원 현황 >

시도	채용시기별 호봉제 적용 인원 현황 (단위: 명)			합계
	(구)육성회 직원	(구)학부모회 직원	학교회계 직원	
	'70.1.1.~'97.12.31.	'98.1.1.~'99.12.31.	'00.1.1.~	
1. 서울	179	40	316	535
2. 부산	67	19	56	142
3. 대구	39	18	64	121
4. 인천	43	11	74	128
5. 광주	31	12	78	121
6. 대전	47	13	76	136
7. 울산	0	0	0	0
8. 세종	4	0	2	6
9. 경기	83	42	359	484
10. 강원	15	4	8	27
11. 충북	24	5	29	58
12. 충남	70	20	100	190
13. 전북	26	6	26	58
14. 전남	54	8	103	165
15. 경북	29	9	79	117
16. 경남	35	9	63	107
17. 제주	9	2	14	25
18. 국립	15	2	12	29
합계	770	220	1,459	2,449

※ 출처: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제출 자료 (기준: '26.6.29.)

※ 육성회직, 학부모회 등 명칭은 시기별로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채용 시기별로 분류 (자료 : 교육부)

6) 2013년 기능직 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라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해 지급하게 됨. 서울·충남교육청의 경우 2024년부터 단체교섭에 따라 일부 호봉제 직원에 대해 8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음.

< 호봉제 적용 교육공무직원 근무 현황 >

시도	기관			학교						합계
	본청	본청 직속	지원청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 학교	
1. 서울	-	-	-	-	-	372	163	-	-	535
2. 부산	-	-	-	-	4	99	39	-	-	142
3. 대구	-	-	-	-	-	75	45	1	-	121
4. 인천	-	-	-	-	1	71	54	2	-	128
5. 광주	-	-	-	12	18	64	26	-	1	121
6. 대전	-	-	-	-	9	89	38	-	-	136
7. 울산	-	-	-	-	-	-	-	-	-	0
8. 세종	-	-	-	-	-	3	3	-	-	6
9. 경기	-	-	-	5	60	196	223	-	-	484
10. 강원	-	-	-	-	-	8	19	-	-	27
11. 충북	1	1	2	-	15	22	16	-	1	58
12. 충남	-	-	-	-	-	120	67	3	-	190
13. 전북	-	-	-	-	5	29	24	-	-	58
14. 전남	-	-	-	-	-	74	91	-	-	165
15. 경북	-	-	-	-	-	57	60	-	-	117
16. 경남	-	-	1	-	-	66	40	-	-	107
17. 제주	-	-	-	-	-	10	15	-	-	25
18. 국립	-	-	-	-	-	10	19	-	-	29
합계	1	1	3	17	112	1,365	942	6	2	2,449

※ 출처: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제출 자료 (기준: '26.6.29.)
(자료 : 교육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장기간 사무 및 교무 행정, 시설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음에도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8급 또는 9급⁷⁾ 호봉제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기간이 경과하면 승진 기회가 주어지고 승진에 따라 보수 역시 연계하여 인상되는데,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경우에는 장기간 근속하더라도 공무원보수규정상 최하위 계급에 머물러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997년 초등 무상교육 당시 공무원으로 전환된 초등학교 육성회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중·고등학교 근무자들은 신분 및 처우에서 지속적인 격차를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③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경력 인정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장기간 근무한 호봉제 학교회계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8급 또는 9급 봉급표의 최고호봉은 31호봉임.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신분보장 및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1997년 초등학교 육성회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된 반면, 동일한 시기 유사한 경위로 채용된 중·고등학교 육성회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들이 장기간 학교 행정실에서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8·9급 호봉제 적용으로 승진이 제한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호봉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례를 도입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 저해 우려, 동일한 학교회계직원 중 월급제 직원이나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제정안은 특례의 적용 대상을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현재 국공립 중·고등학교 외에도 교육청(지원청)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국공립 중·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관계기관 의견]

○ 교육부: 신중 검토

- 제정안을 통한 공무원 특례 임용 방식은 유사 직종 간 형평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국·공립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등에 대하여 고용, 임금 등 근로 조건 등 처우 관련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26.3.)된 바 있으며,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역시 현재 교육공무직으로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타 직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범부처 차원의 ‘공무직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

○ 행정안전부 : 신중 검토

- (공무원 정원 특례 관련) 업무의 양과 성질 등에 따라 배정하는 공무원의 정원 배정 원칙에 어긋나며, 현재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관리 체계와도 맞지 않아 삭제 필요

○ 인사혁신처 : 신중 검토

- (공무원 전환 관련) 특정 경력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실적주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벗어나 채용의 공정성 저하 우려,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나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타 직종 종사자 등 동 특별법 적용 대상 외 집단과의 형평성 및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 등 고려 필요
- (근무경력 인정 관련) 특례 형태로 경력 인정에 대한 일률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현행 호봉경력 인정제도와의 정합성 및 타 공무원 임용자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산입 관련)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경력이 병역 등과 같이 재직기간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특수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 필요

□ 제정안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의견	기관명	주요 내용(요약)
찬성	○ 1개 각급학교 (대구(1)) ○ 1개 노동조합 (전국공립학교호봉제 회계직노동조합 대전 지부)	○ 호봉제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원)은 채용시 기능직공무원 10급의 급여와 호봉체계를 적용 하였고, 육성회비(학교운영비)의 순차적 폐지와 더불어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공무원으로 전직 되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직되지 못한 실정으로 형평성과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전직을 위한 법제정은 타당
일부 수정	○ 1개 각급학교 (부산(1))	○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뿐만 아니라 “월급제 학교회계직원”도 있으므로, “호봉제 및 월급제 학교회계직원” 으로 수정 필요
반대	○ 11개 교육청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경남, 제주) ○ 109개 각급학교 (대구(24), 대전(1), 세종(6), 강원(69), 경북(9)) ○ 4개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 대전, 세종, 경북)	○ 호봉제 학교회계 직원을 별도 선발 절차를 통해 공무원에 임용하고, 과거 근무 경력을 호봉 및 공무원 연급에 산입하는 내용은 기존 공무원 체계와의 형평성 및 조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강한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 필요 - 공무원 전환은 ①채용의 공정성 및 헌법적 가치 훼손 (특혜 논란), ②기존 인사 시스템 혼란, ③타 직군의 연쇄적 신분 전환 요구 및 사회적 갈등 발생, ④과도한 경력 인정 및 연급 산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연금제도 근간 훼손, ⑤ 한정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하던 직원의 ‘고경력 공무원’ 전환에 따른 공직 사회의 전문성 약화 등 큰 혼란 예상

3. 조문의 구성체계

□ 제정안의 법률 제명은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본칙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

조문	주요내용
제1조 (목적)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 목적
제2조 (정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 및 추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따른 호봉·연금 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제5조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
제6조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은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제7조 (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직원(퇴직한 직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70년 1월 1일 이후 학교 육성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나. 1998년 1월 1일 이후 학교 학부모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한 사람

□ 제정안 제1조는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을 법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5조), 종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및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안 제6조·제7조) 등 처우 개선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적조항으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우선, “국공립 중·고등학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제2호(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⁸⁾로 명시하여 제정안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직원으로서 ① 1970년 1월 1일 이후 학교 육성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안 제2조제2호가목),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학교 학부모회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안 제2조제2호나목), ③ 2000년 1월 1일 이후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안 제2조제2호다목)으로 명시하여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8)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제정안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1970년 육성회직원으로 최초 채용된 이후 1997년 육성회가 사라진 뒤 학부모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0년 학교회계가 도입된 이후 학교회계직원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 학교회계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⁹⁾, 제정안의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학교회계직원은 교육공무직원으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 사람을 통칭하는데, 학교회계직원에는 “호봉제 적용을 받는 학교회계직원”과 “월급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제정안(제2조 제2호다목)과 같이 “학교회계직원”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호봉제 적용을 받는 학교회계직원”으로 특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에 따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현재 국공립 중·고등학교 외에도 교육청(지원청)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¹⁰⁾, 특례 적용 대상을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9) 이에 해당되는 학교회계직원은 현재 2,449명인 것으로 나타남.

→ < 채용시기별 호봉제 적용 교육공무직원 현황 자료 > (5페이지)

10) <호봉제 적용 교육공무직원 근무 현황> (6페이지)

(2)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호봉제 학교회계 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 등 공무원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자의 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임용의 절차, 방법, 시기 및 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5조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¹¹⁾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 등 공무원

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자의 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한 호봉제 학교회계 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함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분보장 및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는 경우에도 경력 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²⁾,

호봉제 학교회계직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보임. 또한, 동일한 학교회계직원 중 월급제 직원이나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3)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 ¹³⁾ 은 승진 및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6조는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¹³⁾은 승진 및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과거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과 승진에 반영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보수(호봉)와 승진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령에서 공무원 임용 전 근무경력을 호봉, 승진 등 필요한 사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인정 여부와 경력환산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¹³⁾,

1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확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확정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근무 경력 인정 특례 여부는 현행 호봉 경력 인정제도와와의 정합성 및 타 공무원 임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제7조는 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경력 인정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과거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더해 인정받은 해당 근무 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제25조)¹⁴⁾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실제 공무원 임용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 경력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같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185

14)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 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